「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O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13일, 김광성 의원 발의
- O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O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의 쾌적한 환경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축산농가의 책무(안 제4조)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 2.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O 제안일자 : 2024. 5. 13.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2.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의 쾌적한 환경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축산농가의 책무(안 제4조)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축산법」 제3조에서 지자체는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 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수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책무)에서 <u>군수의 책무</u>로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에서는 <u>축산농가의 책무</u>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우리 군의 <u>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정하고</u>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축산환경 개선사업 > -

- 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종합검토의견

○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지향하고자 축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 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u>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u>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군수</u>·구청 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 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u>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u>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u>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u>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광 성 의원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6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13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축산농가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축산법」제3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3. 28. ~ 2024. 4. 5.(9일간), 아래표 참조.

그 게이(이 취이)	검토안	사유	이정 이건	
조례안(의회안)	(축산농기계과)	(축산농기계과)	의회 의견	
제5조(지원) <u>군수는</u>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5조제2항에 대한 사유 ○ 조례에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사항 에 대한 적용 근거 조항 추가	[원안유지] ○ 보조금 지원 관련 안5조 외에 다른 조문에 서 보조금 지원 관련 규 정이 없기 때문에,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보조금 관련하여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규정 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 바람 직하지 않음.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지방보조 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축산업"이란 <u>「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u>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 2. "축산농가"란 <u>법 제22조제1항</u>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u>같은 조 제3</u> 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3. "축사"란 <u>법 제8호의2</u>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축산환경"이란 <u>법 제2조제10호의2</u>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 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 고.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 2023. 1. 1.]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 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축산농가 328개소(2024. 4월 기준) 대상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 축사 악취저감제, 톱밥, 가축분뇨 처리장비, 퇴비사, 액비생산시설, 액비순 환시스템, 악취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구 분	산출기초(2024년)	예산액	비고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33천원×3,030포	100,000천원	자체사업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300원/kg×2,334톤×50%	350,000천원	자체사업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40,000천원×4개소×50%	80,000천원	도비+자체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50,000천원×3개소×50%	75,000천원	도비+자체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50,000천원×1개소×50%	50,000천원	도비사업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150,000천원×1개소×50%	75,000천원	도비사업
기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	50,000천원×2개소×50%	50,000천원	도비사업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	5,000천원/톤×10톤×50%	25,000천원	도비사업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보조 및 자체 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락처	(033) 330 - 13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서	입	0	0	0	0	0	0
서	출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900,000
축사 악 구	취경감 발효제 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황경축산기반용 톱밥 공 급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다목적 장 비	가축분뇨 처리 지 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_	축산 퇴비자원 시 설 지 원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고품질 지	액비생산시설 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액비순환	환시스템 지원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가축분도 취 저	r 배출시설 악 감 지 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부숙촉? 지	인 악취저감제 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자	원 조달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900,000
	소 계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의존 재원	보조금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지방교부세						0
	소 계	708,000	708,000	708,000	708,000	708,000	3,540,000
자체	지방세						0
수입	세외수입						0
	군비	708,000	708,000	708,000	708,000	708,000	3,54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겁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채무특	기타 부담, 민자 등)						